

1. 의결주문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(약칭: 장기임대주택 법)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,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실태조사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3조의3조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(안 제3조의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1(실태조사의 실시)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“시설물 노후화, 편의 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수준 및 유지보수 현황
2.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 시설 현황
3. 법·제도적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
4. 입주자 등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
5.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1(실태조사의 실시) 법 제</u> <u>3조의3제1항에서 “시설물 노후</u> <u>화,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</u> <u>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</u> <u>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</u> <u>후화 수준 및 유지보수 현황</u> <u>2.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 시설</u> <u>현황</u> <u>3. 법·제도적 변화에 따른 시설</u> <u>개선사항</u> <u>4. 입주자 등의 주거환경 만족도</u> <u>및 선호도</u> <u>5.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</u> <u>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3.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5.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3조의3(실태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,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